이 사 회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이사회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삭제 2017. 2. 22 >[신설 2024.7.26]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개정 1999.4.9 >
③ <삭제 2001.8.14>

제3조의2 (경영철학의 실행)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개정 2017. 2. 22>
②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SK'의 기업문화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7. 2. 22>
③ 이사회는 SK Brand의 사용에 있어 Brand 가치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④ 이사회는 SK Brand의 가치와 SK 기업문화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K Brand와 기업문화를 함께 사용하는 타 회사들과 상호 협력방안을 수립·실행하도록 한다. [본조 신설 2012.3.5]

제 2 장 구 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에 관하여는 정관 제41조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의2 (선임독립이사)
① 이사회는 독립이사를 대표하는 이사(이하 “선임독립이사“라 함)를 독립이사들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6.6.24>
② 선임독립이사의 임기는 선임독립이사의 이사 임기로 한다. <개정 2026.6.24>
③ 선임독립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6.24>
1.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이사협의회의 소집 및 주재
2. 독립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 평가 및 보고
④ 회사는 선임독립이사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4>
[본조 신설 2018.3.28]

제 3 장 회 의

제6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종료 후 45 일 내에 개최하며,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는 업무집행의 상황을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2001.8.14>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 또는 그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이사회 의장 또는 해당 소집권자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사회 의장 또는 해당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5.6.1>

제8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2 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 시기, 장소 및 안건을 서면, 구두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0.4.29, 2001.8.14, 2007.11.23, 2012.3.5, 2017.2.22>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0.4.29>

제9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그러나 법령 또는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한 경우에는 법령 또는 정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0.4.29>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4.29] <개정 2012.3.5>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경영진,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법상의 결의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함)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24>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승인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7) 신주의 발행
(8) 사채의 모집
(9) 준비금의 자본전입
(10)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개정 1999.4.9>
(11) 이사의 경업 및 이사, 주요주주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개정 2020.6.24>
(12)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신설 2000.4.29] <개정

2001.8. 14>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신설 2000.4.29] <개정 2001.8.14>

(14)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수정 결의 [신설 2001.8.14] <개정 2012.3.5>

(15) 소규모 주식교환 [신설 2001.8.14]

(16)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신설 2005.6.1]

(17) 회사 자산 및 매출액의 10 분의 1 이하 규모의 영업양도의 결정 [신설 2005.6.1]

(18)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신설 2005.6.1] <개정 2007.11.23, 2010.4.21>

(19)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신설 2005.6.1]

(20) 준법지원인의 임면 [신설 2020.6.24]

2.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1)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예산·결산

(4) 주요 신규투자 계획, 차입(1 년 이내의 단기 차입 제외), 채무의 보증, 출자,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단, 세부 기준은 이사회 운영세칙에 따르며, 이사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단, 자기자본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상 자기자본을 의미함) <개정 2007.11.23, 2010.4.21, 2012.3.5, 2024.7.26>

(5) <삭제 2012.3.5>

(6) 해외증권의 발행

(7) <삭제 1999.4.9>

(8) 각 위원회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신설 2001.8.14] <개정 2010.4.21>

(9) <삭제 2012.3.5>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 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다음의 행위 단, 감사위원회에 3 인 이상의 독립이사가 포함되고 독립이사 수가 위원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인 경우 감사위원회에 그 의결을 위임함 <개정 2023.10.25, 2026.6.24>

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

나) 분기 거래 합계액을 기준으로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20% 이상을 출자한 회사 또는 그 자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회사를 위하여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 [신설 2012.3.5]

(11) 회사 경영기본이념의 실행을 위한 회사 경영관리 체계의 정립 및 수정 [신설 2012.3.5]

(12) 10 억원 이상의 기부. 그러나, 태풍, 홍수,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구호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기부는 선집행후 사후보고 할 수 있음 [신설 2017.2.22] <개정 2018.3.28><개정 2021.5.7>

(13) (12)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사전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음 <개정 2022.11.23>

가) 동일 기부처에 대한 해당 연도 기부금 합이 10 억원 이상이 되는 시점의 해당 기부 및 이후 해당 연도까지의 기부

나) 동일 목적 및 대상의 회사 기부금이 10 억 미만이나, 해당 연도 동일 목적 및 대상의 계열사 기부금 합이 20 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의 기부

[신설 2020.6.24]

(14)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이사 보수 한도 내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의 결정(단, 사내이사 보수는 제 13 조의 2 에서 정한 인사·보상위원회에 위임함) [신설 2021.5.7]

(15)대표이사에 대한 평가(단,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은 인사·보상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결의도 인사·보상위원회에 위임함) [신설 2021.5.7]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의2 (보고사항)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집행 결과
2. 분/반기 경영실적
3.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을 위임한 경우 그 집행 결과
4. 기타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 중 이사가 요청하거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0.6.24]

제12조 (긴급집행)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사전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 1 항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13조 (위임)

① 이사회는 제 11 조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제 13 조의 2 에서 정하는 이사회내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4.29, 2007.11.23, 2010.4.21, 2012.3.5, 2024.7.26>

1.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개정 2001.8.14>
4. 정관에서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음을 명시한 사항 <개정 2005.6.1>

② 전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사항은 이사회 운영세칙과 해당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다. <삭제 1999.4.9> [신설 2010.4.21] <개정 2012.3.5, 2024.7.26 >

③ <삭제 1999.4.9>

④ <삭제 1999.4.9>

제13조의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이사회는 정관 제 45 조에 따라 이사회 내에 특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다만,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의로써 새로운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4.29, 2010.4.21>

1. 감사위원회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정 2026.6.24>
3. <삭제 2012.3.5>
4. <삭제 2012.3.5>
5. <삭제 2012.3.5>
6. 지속경영위원회 [신설 2018.3.28]
7. 인사·보상위원회 [신설 2020.6.24] <개정 2021.5.7>
8. <삭제 2026.6.24>

② 위원회의 원수는 2 인 이상으로 독립이사가 총 위원의 2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단, 감사위원회의 원수는 3 인 이상으로 독립이사가 총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4.29, 2001.8.14, 2010.4.21, 2012.3.5, 2026.6.2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또는 당해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4.29, 2010.4.21>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의로 소집 할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4.29]

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모든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위원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4.29] <개정 2010.4.21>

⑥ <삭제 2012.3.5>

⑦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00.4.29]

⑧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별도의 위원회 규정을 둔다. [신설 2000.4.29]

제13조의3 (자문위원회)

이사회는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9.4.9>

제13조의4 (경영진)

① 정관 제 46 조에 의거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 <개정 2000.4.29>

② <삭제 2012.3.5>

③ 경영진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으로 구분하며 경영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개정 2000.4.29, 2001. 8.14, 2020.6.24>

④ 경영진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개정 2000.4.29>

⑤ <삭제 2005.6.1>

⑥ <삭제 2012.3.5>

⑦ 경영진에 대한 평가, 보상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사·보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5.7>

⑧ 경영진은 자기가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사에 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1.8.14>

[본조 신설 1999.4.9]

제14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 및 경영진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4. 29, 2001.8.14>

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재임 중 또는 퇴임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1.8.14>

②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④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및 자기가 속한 이사회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최소 참석률 3/4 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01.8.14>
<개정 2022.11.23>

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1999.4.9] <개정 2026.6.24>

⑥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4]

제16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③ <삭제 2017.2.22>

제17조 (이사회 지원)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6.1>

제18조 (이사회에 대한 평가)

이사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사회는 그 결의로써 이사회, 각 위원회 및 독립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7.11.23] <개정 2026.6.24>

부 칙 (1998년 4월20일 시행)

이 규정은 1998년 4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년 4월 9일 시행)

이 규정은 199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년 4월 29일 시행)

이 규정은 200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년 8월 14일 시행)

이 규정은 2001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년 6월 1일 시행)

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년 11월 23일 시행)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년 4월 21일 시행)

이 규정은 201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년 3월 5일 시행)

이 규정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4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년 2월 22일 시행)

이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년 3월 28일 시행)

이 규정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6월 24일 시행)

이 규정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5월 7일 시행)

이 규정은 202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년 11월 23일 시행)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년 1월 1일 시행)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규모내부거래 등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11조제2호10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 이후 거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년 7월 26일 시행)

이 규정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년 6월 24일 시행)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독립이사에 관한 규정)
독립이사 명칭 변경에 따른 제5조의2, 제11조 제2호 10목,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호 1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